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임병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5530
----------	-------

발의연월일 : 2023. 11. 20.

발 의 자 : 임병헌 · 김영선 · 김상훈
이헌승 · 김예지 · 성일종
권성동 · 우신구 · 류성걸
김희국 · 김형동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자 신체검사 결과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해 지방병무청장이 적성을 분류·결정하여 적합한 병과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음. 이를 위해 자격·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국가기관 등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음. 그러다 보니 전역 후에도 동일한 병과·특기로 동원소집되므로 19세 이후 취득한 자격이나 면허는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지방병무청장이 병력동원소집 대상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도 대상자의 자격·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를 국가기관 등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예비군의 병과·특기 분류 시 반영함으로써, 가용자원이 부족한 병과·특기에 대한 병력 확보와 합리적인 병력자원 배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45조의2 신설).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병역동원소집 대상자의 자격·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5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자격·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3.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관리하는 법인

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되는 정보는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지정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자료를 공개 또

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등 병력동원소집 대상자 지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5조의2(병역동원소집 대상자의 자격·면허 등 자료의 제출 요구 등) ① 지방병무청장은 제45조에 따른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지정과 관련하여 병력동원소집 대상자의 자격·면허 취득 또는 취소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u>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u> <u>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u> <u>3. 「자격기본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관리하는 법인</u> <u>② 지방병무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를 각 군 참모총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되는 정보는 병력동</u>

원소집 대상자 지정과 관련된
정보로 한정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자료를 공
개 또는 누설하거나 다른 사람
에게 제공하는 등 병력동원소
집 대상자 지정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